

『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5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윤종호, 김상조, 김인배, 김재상, 김정곤, 박교상,
안장환, 윤영철, 임춘구, 정근수, 한성희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5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5월 20일

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윤 종 호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향 지역 주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(안 제8조제1항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부서의견 : 해당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- 본 「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,
 -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매립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